탄벌A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

2025. 2.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 기준은 “탄벌A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용역” 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2]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 12. 28.)

다.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4-5193호, 2024. 10. 2.)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3. 일반사항

가.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1]와 같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별표2]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5일 이내[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 포함)제외]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된 의견에 대한 확인결과 진행중인 용역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마.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참여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바. 가격입찰 후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사.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7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별표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별표3]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별표3]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
여
기
술
인</td><td></td><td></td><td>(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table>
<tr><th>이적기간</th><th>감소계수</th></tr>
<tr><td>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td><td>0.90</td></tr>
<tr><td>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td><td>0.95</td></tr>
<tr><td>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td><td>1.00</td></tr>
</table></td></tr>
<tr><td></td><td>(1)사업책임기술인</td><td>(15)</td><td>-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td></tr>
<tr><td></td><td>(가)등급</td><td>3</td><td>-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tr><td>등급</td><td>특급기술인</td><td>고급기술인</td><td>중급기술인</td><td>초급기술인</td></tr>
<tr><td>배점</td><td>3.0</td><td>2.0</td><td>1.0</td><td>0.5</td></tr>
</table></td></tr>
<tr><td></td><td>(나)경력</td><td>4</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tr><td>경력</td><td>15년 이상</td><td>15년 미만
~ 13년 이상</td><td>13년 미만
~ 11년 이상</td><td>11년 미만
~ 9년 이상</td><td>9년 미만</td></tr>
<tr><td>배점</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td></tr>
<tr><td></td><td>(다)실적</td><td>8</td><td>-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table>
<tr><td>실적</td><td>10건 이상</td><td>10건 미만
~ 8건 이상</td><td>8건 미만
~ 6건 이상</td><td>6건 미만
~ 4건 이상</td><td>4건 미만</td></tr>
<tr><td>배점</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td></tr>
<tr><td></td><td>(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td><td>0</td><td>- 사업비 10억원 미만 용역으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가. 참여기술인</td><td>(2) 분야별 책임기술인</td><td>(19)</td><td>-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td></tr>
<tr><td>(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td><td>4

7

8</td><td>-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tr><td>등급</td><td>고급기술인 이상</td><td>중급기술인</td><td>초급기술인</td></tr>
<tr><td>배점</td><td>4.0</td><td>3.0</td><td>2.0</td></tr>
</table>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tr><td>경력</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 ~ 9년 이상</td><td>9년 미만 ~ 8년 이상</td><td>8년 미만 ~ 7년 이상</td><td>7년 미만</td></tr>
<tr><td>배점</td><td>7.0</td><td>6.3</td><td>5.6</td><td>4.9</td><td>4.2</td></tr>
</table>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table>
<tr><td>실적</td><td>7건 이상</td><td>7건 미만 ~ 6건 이상</td><td>6건 미만 ~ 5건 이상</td><td>5건 미만 ~ 4건 이상</td><td>4건 미만</td></tr>
<tr><td>배점</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td></tr>
<tr><td></td><td>(3)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td><td>(14)

4

5

5</td><td>-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tr><td>등급</td><td>중급기술인 이상</td><td>초급기술인</td></tr>
<tr><td>배점</td><td>4.0</td><td>3.0</td></tr>
</table>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tr><td>경력</td><td>5년 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 ~2년이상</td><td>2년 미만</td></tr>
<tr><td>배점</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table>
<tr><td>실적</td><td>5건 이상</td><td>5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 ~3건이상</td><td>3건미만 ~2건이상</td><td>2건 미만</td></tr>
<tr><td>배점</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td></tr>
<tr><td></td><td>(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td><td>(2)
2

0</td><td>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3">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td><td>(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td><td>[15]

7</td><td>*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별표3]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table>
<tr><td>실적</td><td>5건 이상</td><td>5건 미만 ~ 4건 이상</td><td>4건 미만 ~ 3건 이상</td><td>3건 미만 ~ 2건 이상</td><td>2건 미만</td></tr>
<tr><td>배점</td><td>7.0</td><td>6.3</td><td>5.6</td><td>4.9</td><td>4.2</td></tr>
</table>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td></tr>
<tr><td>(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td><td>6</td><td>-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별표3]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table>
<tr><td>금액</td><td>50억 이상</td><td>50억 미만 ~40억 이상</td><td>40억 미만 ~30억 이상</td><td>30억 미만 ~20억 이상</td><td>20억 미만</td></tr>
<tr><td>배점</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able></td></tr>
<tr><td>(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td><td>0</td><td>-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td></tr>
<tr><td></td><td>(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td><td>2</td><td>-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table>
<tr><td>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td><td>95점 이상</td><td>95점 미만 92점 이상</td><td>92점 미만 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6점 이상</td><td>86점 미만</td></tr>
<tr><td>배점</td><td>2점</td><td>1.8점</td><td>1.6점</td><td>1.4점</td><td>1.2점</td></tr>
</table>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td><td></td><td></td><td>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 \frac{\sum_{i=1}^{n}(\text{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_i \times \text{해당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_i)}{\sum_{i=1}^{n}\text{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_i}$$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table>
<tr><th>참여사
(A컨소시엄)</th><th>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th><th>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점수</th><th>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th></tr>
<tr><td>a사(60%)
①건설엔지니어링
②건설엔지니어링
③건설엔지니어링</td><td>
10
15
20</td><td>(1.4점)
80
85
90</td><td>86.11점</td></tr>
<tr><td>b사(30%)
①건설엔지니어링</td><td>15</td><td>(1.8점)
92</td><td>92점</td></tr>
<tr><td>c사(10%)
실적없음</td><td></td><td>(1.6점)</td><td></td></tr>
</table>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td></tr>
<tr><td>다.
신
용
도</td><td>(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td><td>[10]
7</td><td>-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다.
신
용
도</td><td>(2)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table>
<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
</table>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td></tr>
<tr><td>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td><td>(1)개발실적</td><td>[15]
2</td><td>-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table>
<tr><td>경과기간</td><td>5년 미만</td><td>5년 이상
10년 미만</td><td>10년 이상
20년 미만</td></tr>
<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able>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td>(2)투자실적</td><td>10</td><td>-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
<tr><td>비율</td><td>1.50% 이상</td><td>1.50% 미만
1.25% 이상</td><td>1.25% 미만
1.00% 이상</td><td>1.0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0% 이상</td></tr>
<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td></tr>
<tr><td>(3)활용실적</td><td>3</td><td>-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가중치</td></tr>
<tr><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r>
<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 미만
18 이상</td><td>18 미만
16 이상</td><td>16 미만
14 이상</td><td>14 미만
12 이상</td></tr>
</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마. 업무중복도</td><td></td><td>[10]</td><td>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도로</th><th>항만</th><th>철도</th><th>수자원</th><th>상수도</th><th>하수도</th><th>국토도시</th><th>기타(평균값)</th></tr>
<tr><td rowspan="3">협회기준 (‘24.9월)</td><td>전체평균</td><td>189</td><td>197</td><td>187</td><td>270</td><td>280</td><td>262</td><td>377</td><td>252</td></tr>
<tr><td>사책</td><td>177</td><td>157</td><td>165</td><td>240</td><td>227</td><td>224</td><td>393</td><td>226</td></tr>
<tr><td>분책</td><td>205</td><td>210</td><td>195</td><td>282</td><td>293</td><td>273</td><td>391</td><td>264</td></tr>
<tr><td rowspan="2">만점기준 적용</td><td>사책</td><td>200</td><td>200</td><td>200</td><td>250</td><td>250</td><td>250</td><td>300</td><td>250</td></tr>
<tr><td>분책</td><td>250</td><td>250</td><td>200</td><td>300</td><td>300</td><td>300</td><td>300</td><td>300</td></tr>
</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td></tr>
<tr><td></td><td>(1)사업책임기술인</td><td>3</td><td>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국토도시분야>

<table>
<tr><td>구분</td><td>300%미만</td><td>300%이상～350%미만</td><td>350%이상～400%미만</td><td>400%이상～450%미만</td><td>450%이상</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3">마. 업무중복도</td><td>(2)분야별 책임기술인</td><td>4</td><td>-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토질 및 지질'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table><tr><td>구분</td><td>300%미만</td><td>300%이상~350%미만</td><td>350%이상~400%미만</td><td>400%이상~450%미만</td><td>450%이상</td></tr><tr><td>점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table></td></tr>
<tr><td>(3)분야별 참여기술인</td><td>2</td><td>-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토질 및 지질'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table><tr><td>구분</td><td>300%미만</td><td>300%이상~350%미만</td><td>350%이상~400%미만</td><td>400%이상~450%미만</td><td>450%이상</td></tr><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td></tr>
<tr><td>(4)실무기술인</td><td>1</td><td>-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토질 및 지질'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table><tr><td>구분</td><td>300%미만</td><td>300%이상~350%미만</td><td>350%이상~400%미만</td><td>400%이상~450%미만</td><td>450%이상</td></tr><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td></tr>
</table>

3. 가점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가점</td><td>건설기술인
신규 고용</td><td>-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td></tr>
<tr><td>젊은 기술인
참여</td><td>-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table>
<tr><td>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td><td>5% 이상</td><td>3% 이상</td><td>1%이상</td></tr>
<tr><td>가점</td><td>0.2점</td><td>0.15점</td><td>0.1점</td></tr>
</table></td></tr>
</table>

※ 비고 : 위 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별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작성안내서 첨부 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로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로 법정계획[도로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의 경우 - 도로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도로 법정계획(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2차로 이상 신설 또는 확장에 한함) 로서 아래 규모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연장 2.0km 이상(4차로 이상은 1.0km 이상) - 교량 1개소의 연장 100m 이상 또는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터널 1개소의 연장이 300m 이상이거나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철도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으로서 아래 구분에 의함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의 경우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 적용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노반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철도궤도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실적의 60% 인정 -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궤도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노반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경전철포함) 이외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소규모지하안전평가는 3천만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분야 제한 없음)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60% 인정
하천	○ 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지방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60% 인정 ○ 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방하천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의 80% 인정 ○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수생태계 복원 등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경우 - 하천기본계획, 하천환경관리계획, 치수사업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생태계 복원계획, 하천분야 기본설계, 실시설계
항만·어항	○ 항만 및 어항분야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경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조경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산림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숲길 조성 ②「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③「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④「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⑥「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숲, 생활숲 조성 ①~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시	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하수도	상수도	○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하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하수도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교통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개선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교통법정계획의 경우 - 도시교통정비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의 실적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동일한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100%, 이외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은 60% 인정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단 교통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조사, 교통안전진단)는 해당 사업분야의 인정기준 금액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작성안내서 첨부 4)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